

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제2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한국표준협회장

1. 모집 개요

배경

- 해외 인증 획득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해외인증 멘토링을 제공하여 수출 확대 지원

모집규모 : 소비재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30개사 이내(선착순모집)

모집기간 : 2026. 6. 26.(금) ~ 7. 15.(수)

지원기간 : 선정일 ~ 3개월 이내

모집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운영기관 : 한국표준협회

2.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 화장품, 패션·의류(섬유),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해외인증* 관련 기업 맞춤형 전주기 종합 멘토링

* [붙임3] " 26년 품목·권역별 컨설팅 가능 주요 해외인증" 참고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 계획과 인증준비 수준을 종합 진단한 후,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여 인증신청부터 완료까지 소과정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사전진단 : 품목 및 수출국 등을 검토한 후 인증획득의 시급성 및 인증 준비도를 고려하여 진단
 - 전주기 멘토링* : 사전진단 후 해외인증 취득에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멘토링 제공(자문 3회 내외)
- * 전주기 멘토링은 사전진단 기업 중 연내 인증 준비·진행 또는 완료 가능 기업 우선 제공

< 전주기 멘토링 지원 범위 >

- 1) 기업지원목적에 따라 기업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조력자 역할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자문
- 2) 인증 대상 여부 검토, 대상국 규제 및 바이어 요구 인증 취득 전략 수립
- 3) 인증 신청서류(기술문서 등) 작성, 기간·비용 안내, 시험·인증 대행기관 안내
- 4) 제품 시험규격 요구사항 등 시제품 설계시 시험인증기준 부합화 여부, 인증 심사 후 수정(보완) 요청사항 자문 등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동일한 모델과 제품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26.6.26. 기준)

□ 우대사항

○ 신청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우대

- ◆ '26년 말까지 해외시장 진출 준비 또는 해외 수출 예정 기업
- ◆ '26년 말까지 해외인증 시험 신청 또는 완료 가능 기업
- ◆ 산업통상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업)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에서 로그인 후 신청 [붙임2
참고 + 온라인(구글폼) 신청

※ 사이트 제출과 구글폼 제출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

□ 신청기간 : 2026.6.26.(금)~2026.7.15(수) 18시까지

□ 진행절차

신청 접수	신청서 검토	사전진단	지원결정	자문진행	자문종료
신청서 온라인 제출	기업 애로품목, 수출국 검토	인증획득의 시급성, 준비도 검토	전문가 섭외매칭 기업 지원통보	전문가 심층자문 진행 (3회 내외)	자문결과보고 (전문가) 만족도조사(기업)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신청서	필수	공고문 [서식 1], 구글 신청서 모두 제출 (https://forms.gle/4yeY2QVWqanpf6EH9)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고문 [서식 2]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중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중견]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IC0010.do)
제품 확인 자료	필수	제품설명서 등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	비필수	관련 증빙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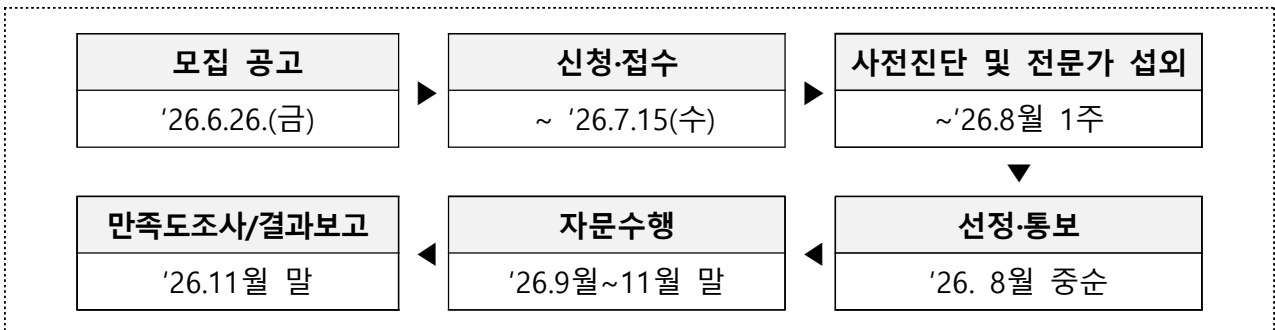
□ 신청 시 유의사항

- ◆ 기업당 하나의 제품에 대해 1개 국가, 1개 인증에 한해 수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 ◆ 일부 고난도·고비용 인증(CBAM, ESG 등)의 경우 자부담비가 발생할 수 있음
- ◆ 선정 후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 시 지원 취소
- ◆ 지원 우수기업은 해외인증지원단 우수 지원사례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음
- ◆ 담당 전문가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2주 이상 무응답하거나 최초 자문 후 수출 국 및 수출 제품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기술 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5. 선정방법 및 추진 일정

-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에 따른 시급성 및 인증 준비 수준을 평가한 후 신청자격, 우대조건 및 자문 전문가의 기술자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추진 일정 >



- * 신청기업 대상 사전진단은 해외인증지원단 및 전문가 각 1인의 화상회의(1시간 내외) 또는 기업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불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운영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표준협회	02-6240-4776	globalcertification@ksa.or.kr

[서식1]

기업정보 등 작성 : <https://forms.gle/4yeY2QVWqanpf6EH9>

신청구분

인증명 ¹⁾		제품군	
제품명 ¹⁾		인증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1)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만 신청 가능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HS CODE
사진 첨부	
<제품 개요> - 용도 및 목적 기재	
<제품 특이사항> - 내용	
<제품 경쟁력> -	

<p><(해당 시)해당 제품에 대해 보유한 해외인증> -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p>
<p><예상수출 지역> -</p>
<p><예상수출 효과> -</p>
<p><수출 예정금액, 물량 등> -</p>

추진일정 및 신청 사유

추진일정	
신청사유	

※ 신청제품 정보 및 신청사유 등을 3장 이내로 작성 가능

※ 첨부 요청 서류 (제품사진, 설명서 등)

본인은 상기와 같이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또는 서명)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등 위한 목적

② 수집·이용할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 기업의 기본정보

③ 개인(기업)법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기업)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기업)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나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신청 시의 이력 관리를 위해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⑤ 운영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제공받는 자

한국표준협회, 참여 기술자문기관 등 대상기업 선정 및 검토가 필요한 기관

② 제공의 목적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선정,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③ 제공할 개인(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기업의 기본정보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⑥ 운영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또는 서명)

신청구분

인증명 ¹⁾		제품군	
제품명 ¹⁾		인증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1)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만 신청 가능

신청제품 정보

제품명	HS CODE
사진 첨부	
<p><제품 개요> - 용도 및 목적 기재</p> <p><제품 특이사항> - 내용</p> <p><제품 경쟁력> -</p> <p><(해당 시)해당 제품에 대해 보유한 해외인증> -</p>	
<p><예상수출 지역> -</p> <p><예상수출 효과> -</p> <p><수출 예정금액, 물량 등>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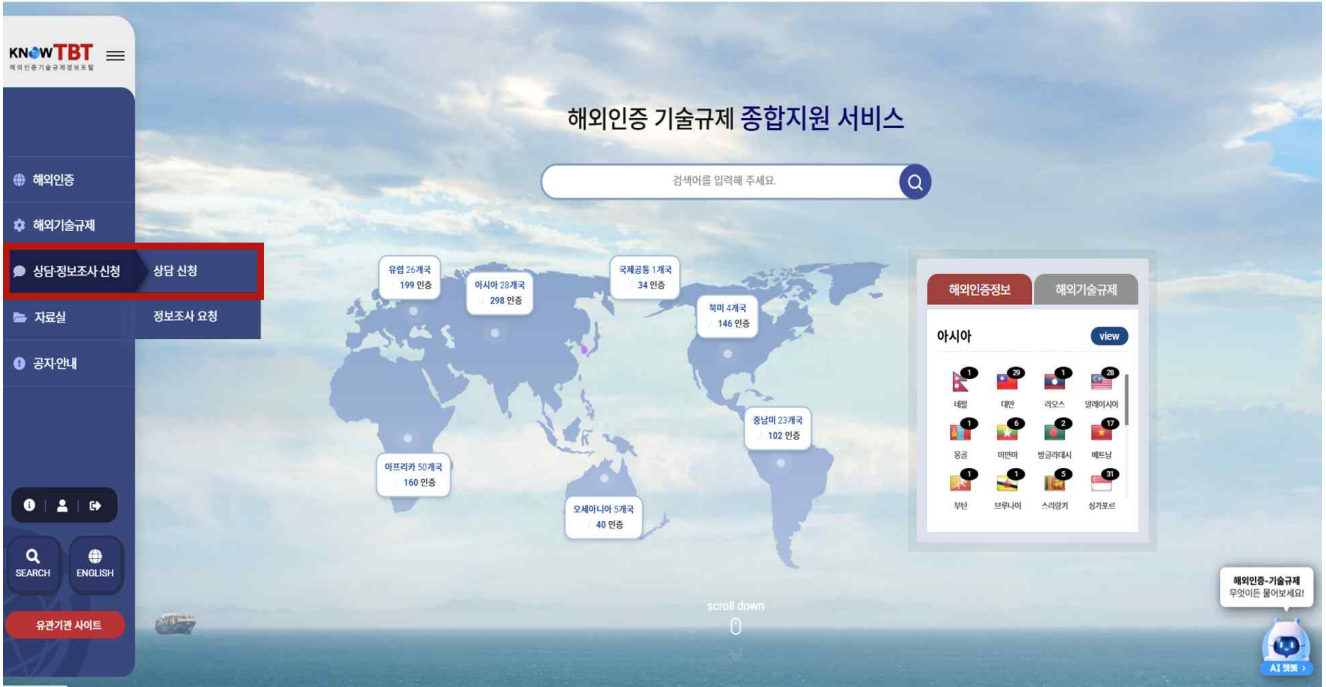
추진일정 및 신청 사유

추진일정 : 신청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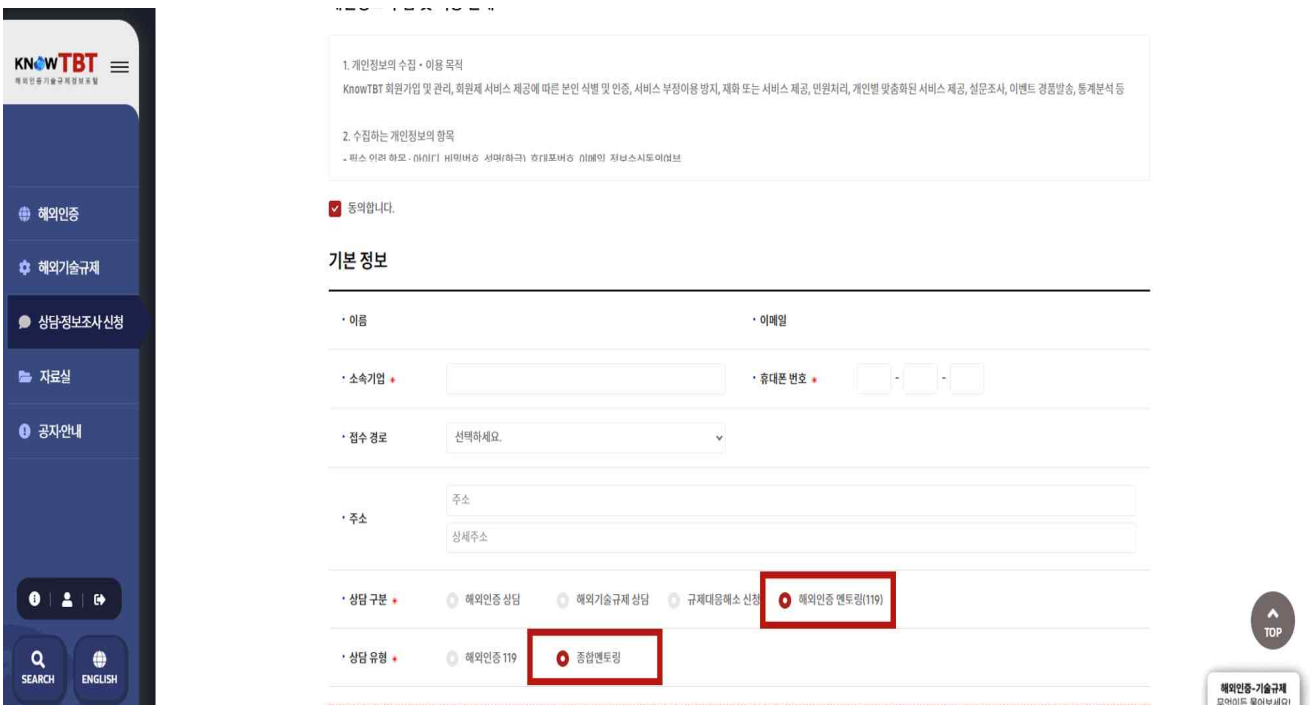
※ 신청제품 정보 및 신청사유 등을 3장 이내로 작성 가능

[붙임2] 신청방법

① Know TBT 사이트(https://www.knowtbt.kr/main/main.do)-상담·정보조사신청-상담신청



② 상담구분 탭: “해외인증 멘토링(119)” 선택 & 상담유형탭- “종합멘토링” 선택



[붙임3] '26년 소비재 품목·권역별 컨설팅 가능 주요 해외인증

품목 ¹⁾	권역 및 국가					컨설팅 가능 주요 해외규격인증
	유럽중 동	미주	중국일 본	동남 아	국제	
화장품	○	○	○	○	△	중동 ECAS/EQM, UK SCPN, 유럽 CPNP, 미국 FDA(MoCRA), 중국 NMPA, 중국 기허가 원료 등록, 일본 PMDA, 베트남 화장품 등록, 인니 BPOM, ASEAN, 할랄인증(국제·동남아·중동), 국제 CGMP(ISO22716), 라벨링 검토 등 준비사항
패션· 의류	○	○	○	X	○	사우디·카타르 CoC, 미국 CPSC/CPSIA(유아동복), 중국 GB Test, 국제 GRS/RCS(재생원료), 국제 OCS/GOTS(유기농섬유), Oeko-Tex/ Eco-Passport/ Higg Index/ ZDHC(친환경의류), 국제 RDS/RWS(친환경울) 등
식품	○	○	○	○	○	독일 LFGB, 사우디 SFDA, 미국 FDA (GRAS/NDI/FFR/FCE-SID/FCS/GMP), NSF, FSMA, Health Canada, 미국/캐나다 식품라벨링, 농수산물품 국제 품질시스템 인증(ISO/FSSC 22000, BRCGS, SQF, IFS, Vegan, Non-GMO,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etc.), 애완동물사료(NOAA/FWS), 중국 및 아세안 일반식품/건기식, 할랄인증(국제·동남아·중동) 등
의료 용품	○	△	○	○	○	중동 GCC, 호주 TGA, 유럽 CE IVDR, MDR, 미국 FDA(1등급 510(k)/FDA 보안, 임상 제외), 브라질 ANVISA, 중국 NMPA, 일본 PMDA, 동남아 보건부등록, ASEAN, 인도 CDSCO, 국제 MDSAP, GMP(ISO 13485), IEC 60601 등
생활 용품	○	○	○	○	X	독일 GS, 유럽 CE, 미국 CPC, 중국 CCC/CQC/GB/FCM(식품접촉물질), 일본 JFSL(식품용기), 대만 BSMI, 싱가포르 CPSR, 인도네시아 SNI, 인도 BIS 등
전기 전자	○	○	○	○	△	유럽 CE, SEMI(반도체장비), 호주 RCM, 중동 GCC, G-mark, 사우디 SASO, 러시아 CU(EAC), 미국 NRTL, FCC, AHAM(가전제품), 브라질 INMETRO, 중국 CCC, 일본 PSE, 베트남 CR-Mark, 국제 IECEE-CB, 배터리 및 어댑터(UN38.3, UL, TUV, NOM, IC, Energy Star, CEC 등), EVC(전기차부품) 등

1) ○ 가능, 2) △ 부분가능, 3) X 불가